

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

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공사명		천안공과대학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		
공사개요		(위치)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캠퍼스 내 테니스장 (내용) 테니스장 기반 조성, 콘크리트 포장, 보도·경계석 정비 등 ※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(기간) 착공일로부터 60일간		
추정금액		금58,023,000원	투찰개시일시	2026. 9. 23.(수) 10:00
기초금액		금58,023,000원	투찰마감일시	2026. 10. 1.(목) 10:00
	추정가격	금52,748,182원	개찰일시	2026. 10. 1.(목) 11:00
	부가가치세	금5,274,818원	개찰장소	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계약담당자 PC (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)
	관급자설치	금29,810,000원		
	관급자재			

- ※ 총액입찰(견적), 지역제한, 적격심사 비대상, 단독이행 공사입니다.
- ※ 4.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-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.
- ※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,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.
- ※ 인조잔디의 구매·설치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별도 시행하며, 본 공사 견적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기반조성·포장·부대공사를 시행합니다.
- ※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.

2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, 입찰참가 등록마감일(서류접수 마감일)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,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- 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·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「지반조성·포장공사업(주력분야: 포장공사)」을 등록한 업체
 - 2)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

런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(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)

- 나.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 - 다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.
 - 라. 본 입찰(전적)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한 대표자 또는 적법한 입찰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마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.
 - 바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 관련 서약은 전자전적서에 포함된 서약으로 갈음합니다.
 - 사. 전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(수의계약체결 제한)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3. 입찰보증금

- 가.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을 위한 전적서 제출 안내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10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

4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$\pm 2\%$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- 나.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 대비 전적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의 비율이 89.745%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전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(A값은 제6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항목 합계: 1,960,592원)

- 다.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10조의2를 따릅니다. 특히 부적격 판명 또는 계약포기 시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는 등 같은 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
- 라. 동일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.
- 마. 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자가 2인 미만이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10조 등에 따라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바.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세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금액을 정합니다.

5. 견적제출의 무효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, 「공사입찰유의서」 제15조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의 입찰무효 기준을 준용합니다.
- 나. 무자격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제출한 견적, 타인의 인증수단을 차용하여 제출한 견적 등은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.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 결정 전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·등록수첩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의 재직·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6.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

가.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

(단위:원)

국민건강보험료	국민연금보험료	노인장기요양보험료	퇴직공제부금비	산업안전보건관리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	계(A값)
315,357	416,674	41,437	0	1,187,124	0	0	1,960,592

- 나. 입찰참가자(계약상대자)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(계약금액)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다. 국민건강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적용 대상 퇴직공제부금비는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의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.

다.

- 라.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합니다.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계상되는 경우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.
- 마. 환경보전비,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하며, 납입확인서·사용내역·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바. 기타 납입확인서, 사용내역서, 지출영수증,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,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7.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

- 가. 계약상대자는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고,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일에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 및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.
- 다. 구분관리 또는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제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8. 「하도급지킴이」(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) 이용

- 가.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나. 적용 대상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약서와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결제계좌 자료를 제출하고, 하도급계약 및 장비·자재 거래 등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다. 공사대금의 청구·수령 및 하도급대금, 근로자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 지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라.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의무사용 제외 대상의 이용 여부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릅니다.
- 마. 「하도급지킴이」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‘나라장터시스템-하도급지킴이-시스템사용안내(업체)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최종계약자(하도급업체 포함)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「하도급관리시스템」을 이용하여

하도급자, 건설근로자, 장비/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고,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,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9. 하도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

- 가.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, 승인·통보 및 직접시공 의무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일괄하도급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나. 직접시공계획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·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참가 대상자는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전자견적서에 해당 확약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법령에 위반한 하도급 등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
10.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

- 가.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3에 따른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(또는 하수급인)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(또는 직불 합의서)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**건설기계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, 자재·장비 대금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 후 지급내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다. 현장별 보증서 제출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개별 보증 또는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건설기계 사용내역 및 대여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 보증서 발급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.

11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- 가. 계약상대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·보건 의무를

준수하여야 하며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나. 견적제출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학내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구역 출입통제, 안전표지, 보행 동선 확보, 분진·소음 저감 및 장비 이동 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과 작업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

12. 청렴계약 이행사항

- 가.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나라장터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서약으로 제출을 같음하며,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금품·향응 제공, 담합 등 청렴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 및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·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13. 기타사항

- 가. 견적제출자는 공고문, 설계내역서, 시방서, 「공사입찰유의서」,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, 「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, 나라장터 관련 규정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설계도서의 불일치·누락 또는 공사와 별도 관급 구매·설치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.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며, 관계 법령에 반하는 시방서의 문구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등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현장여건 변경, 설계변경,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에 따릅니다.

- 라.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별도 관급 설치업체와 기반면 인계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.
- 마.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전에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개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안내에 따릅니다.
- 바.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같습니다.
- 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공사에 관한 사항: 천안공과대학 시설팀 윤승희 ☎ 041-521-9032
 - 계약에 관한 사항: 천안공과대학 총무팀 최수원 ☎ 041-521-9022
 -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: 조달청 콜센터 ☎ 1588-0800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21.

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